



2023년 골프 규칙에 대한 설명

2026년 1월 1일 업데이트

골프 규칙에 대한 설명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업데이트되며, 다음 설명은 2026년 4월에 업데이트될 것이다.

새로운 추가

위원회 절차

로컬룰 모델 A-4 -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

로컬룰 모델 E-14 - 플레이어가 볼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로컬룰 모델 F-2 - 박힌 볼에 대한 구제를 제한 또는 확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F-5 -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

로컬룰 모델 G-6 - 전동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로컬룰 모델 G-9 -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을 교체하는 경우

주: 본 문서에 상세히 기재된 MLR G-9의 개정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발표되었거나 디지털 버전 MLR G-9을 대체한다.

규칙

규칙 5:

규칙 5.2:

5.2b/3 -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라운드 전의 코스에서의 연습에 대한 페널티

규칙 5.2b에서는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라운드 전에 코스에서의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규칙 5.2b에서 언급하고 있는 페널티는 ‘코스에서의 연습’으로 하는 스트로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에서 볼을 굴려보거나 그린 표면을 문질러보아 퍼팅그린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어떤 한 그린의 표면을 문지른 경우, 그 그린을 문지른 횟수와 관계없이, 플레이어는 규칙 5.2b를 한 번만 위반한 것이다. (2022년 12월 추가)

규칙 8:

규칙 8.1:

8.1a/10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8.1a(2)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가져다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는 데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 스프링클러 헤드가 돌출되어있는 경우, 그 스프링클러 헤드는 원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그것을 아래로 밀어넣을 수 있다.
- 배수구 뚜껑이 제거되었거나 분리되어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배수구 뚜껑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플레이어가 그런 행동으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개선되

더라도, 규칙 8에 따른 페널티는 없다. (2023년 7월 추가)

규칙 10:

규칙 10.2:

10.2b/1 자립형 퍼터를 이용하여 정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립형 퍼터가 『장비 규칙』에 적합한 클럽으로 등록된 클럽인 경우, 플레이어는 그 퍼터를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4.1a(1)). 그러나 플레이어(또는 캐디)가 규칙 10.2b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자립형 퍼터를 지면에 내려놓아서 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나타내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볼이 놓인 지점 바로 뒤나 옆에 자립형 퍼터를 세워둔 경우, 규칙 10.2b(3)에 위반된다. (2025년 1월 원복)

10.2b(3)/1 클럽헤드를 볼 뒤의 지면에 대고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10.2b(3)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물체(예-얼라 인먼트 스틱이나 클럽)를 지면에 내려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 10.2b(3)이 플레이어가 클럽헤드를 볼 뒤쪽의 지면에 대는 것(예-플레이어가 그 볼 뒤에 서서 클럽헤드를 플레이 선에 수직으로 댄 후 계속 그 클럽을 잡은 채,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 볼 뒤쪽으로부터 볼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경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1월 원복)

10.2b(3)/2 자립형 퍼터의 특정한 용도에 대한 규칙 적용의 유예 (2025년 1월 철회)

규칙 11:

규칙 11.1:

11.1b(2)/1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퍼팅그린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을 맞힌 경우

퍼팅그린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를 포함하여, 볼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하여 움직이고 있는 볼이 그 퍼팅그린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을 우연히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그 스트로크를 한 지점에서 원래의 볼 또는 다른 볼을 플레이함으로써 그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14.6 참조). (2024년 1월 추가)

규칙 14:

규칙 14.3:

14.3b(4)/1 규칙 14.7a에 따른 일반 페널티 적용

규칙 14.3b(4)의 마지막 점(•)과 관련하여, 플레이어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스트로크를 하여 일반 페널티를 받는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는 규칙 14.7a에 따른 일반 페널티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플레이어가 그 후방선상으로부터 옆방향으로 한 클럽 길이 이내에 볼을 드롭한 경우, 그 볼이 그 선상에 정지하더라도 그 볼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볼이다. 규칙 14.7a에 따른 일반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볼을 다시 드롭해야 한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면서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플레이어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추가)

위원회 절차

섹션 5A(5) 스코어카드가 제출된 시점

다음과 같은 지침은 몇몇 단체들이 일정한 시간을 스코어카드 제출 시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위원회 절차』에 추가된 지침이다.

이 정책들은 골프 규칙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나 경기 주최 측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스코어카드가 제출된 시점을 특정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시간 이후 플레이어는 더 이상 자신의 스코어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규칙 3.3b(2) 참조).

섹션 5A(5)a에 추가된 이 새로운 지침은 위원회에서 스코어카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방식 및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a. 스코어카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특정하는 방법

- 2024년 동안, 골프 규칙 관할 단체들은 골프 규칙에서 일정한 시간(예-15분 이내)을 스코어카드가 제출되는 시점으로 규정하는 정책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 이러한 정책은 플레이어가 그 일정한 시간 내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서 스코어카드상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플레이어가 라운드를 끝낸 후 스코어카드 제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위원회는 허용되는 시간과 그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 플레이어가 지정된 스코어카드 제출 장소를 떠난 시점
 - 플레이어가 속한 그룹이 그 라운드의 마지막 홀을 마친 시점
 - 플레이어의 스코어카드가 전자식 스코어링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

(2025년 1월 추가)

로컬룰 모델 A-4

A-4 -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

목적: 코스 설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위원회는 특정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코스의 특정 부분을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로 특정할 수 있다(로컬룰 모델 A-4.1 참조).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코스의 경계가 특정 홀의 티잉구역에서 한 스트로크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로컬룰 모델 A-4.2 참조).

이와 같이 코스 내부에 아웃오브바운즈를 특정하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그 홀에서 그 코스의 다른 부분 쪽으로 플레이하거나 그 코스의 다른 부분에서 그 홀 쪽으로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도그레그 홀에서 플레이어가 그 도그레그를 가로질러서 다른 홀의 페어웨이 쪽으로 볼을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란 코스의 경계 밖에 정지한 경우의 볼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스 내부의 경계를 넘어간 볼이나 그 경계를 넘어갔다가 도로 넘어와서 동일한 구역에 정지한 볼을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라고 규정하는 로컬룰은 승인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A-4.1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한 방법(예-하얀 말뚝)]으로 규정된 그 홀의 [위치나 좌우를 특정]는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이다.”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물체(예-말뚝)]는 [홀 번호]의 경계물이다. 다른 모든 홀을 플레이하는 경우, 그 경계물은 [움직일 수 없는/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로컬룰 모델 A-4.2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티잉구역에서 한 스트로크에 한하여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한 방법(예-하얀 말뚝)]으로 규정된 그 홀의 [위치나 좌우를 특정]는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이다.”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티잉구역에서 한 스트로크에 한하여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물체(예-말뚝)]는 [홀 번호]의 코스의 경계물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 그 코스의 경계물은 [움직일 수 없는/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2026년 1월 개정)

로컬룰 모델 E-13:

E-13 - 플레이어의 볼 가까이 있는 동물이 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인 경우, 플레이어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목적: 어떤 동물이 플레이어의 볼에 닿아있거나 가까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동물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 동물이 그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규칙 9.6이 적용된다.

그 동물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플레이어가 그 동물을 제거하다가 그 볼을 움직이게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동물을 제거하는 방법(규칙 9.4b).
- 페널티 구제(규칙 17.1 또는 19.1)를 받는 방법
- 그 동물이 여전히 그 볼에 닿아있거나 가까이 있는 상태 그대로 그 볼을 플레이하는 방법

본 로컬룰은 플레이어가 규칙 9.4에 따른 페널티 없이 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로컬룰 모델 E-13

“플레이어의 볼에 닿아있거나 가까이 있는 동물이 루스임페디먼트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인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동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그 동물을 제거하는 동안 자신의 볼을 움직인 경우:

- 페널티는 없으며
- 그 볼은 반드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 (2023년 7월 추가)

로컬룰 모델 E-14:

E-14 - 플레이어가 볼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목적: 플레이어(또는 그 플레이어의 캐디)의 행동으로 인해 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인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이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으로 볼이 움직였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볼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규칙 9.4a에 따른 리플레이스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설명 9.2a/2 참조).

그러나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자신의 볼이 움직였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하는 의무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해 본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이 채택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플레이한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규칙 9.4b에 따라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한 1벌타만 받는다(단, 규칙 9.4b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로컬룰은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볼을 움직였거나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볼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와,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볼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올바르게 해결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E-14

“플레이어가 정지해 있던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하였으나 볼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나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다음 스트로크를 한 경우, 플레이어가 볼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후에 알려지더라도 규칙 9.4b에 따라 1벌타만 받는다(단, 해당 규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정지해 있던 자신의 볼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다음 스트로크를 한 후, 플레이어가 볼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규칙 14.7a에 따른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이 일반 페널티는 플레이어가 볼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플레이어 자신이 그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6년 1월 추가)

로컬룰 모델 F-2:

F-2 - 박힌 볼에 대한 구제를 제한 또는 확대하는 경우

목적 - 규칙 16.3에서는 볼이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허용한다(잔디 높이가 페어웨이 잔디 보다 높은 구역에 있는 모래에 박힌 경우는 제외).

그러나 위원회는:

- 볼이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거나,
- 벙커의 벽이나 턱(예-뗏장이나 흙으로 된 측벽)에 박힌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생방송 TV 중계가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플레이 중에 실시간으로 내려진 재정에 대하여 해당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관한 비디오 증거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를 근거로 사후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MLR F-2.3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2.1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에만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된다. [벙커 측면에 쌓아놓은 뗏장은 본 로컬룰의 목적상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잔디가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2.2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벙커에서 [측면에 쌓아놓은 뗏장][흙벽]에 박힌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F-2.3

본 로컬룰 모델은 생방송 TV 중계가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플레이 중에 실시간으로 내려진 재정에 대하여 해당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관한 비디오 증거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를 근거로 사후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본 로컬룰 모델을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규칙 16.3a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추가하여, 레프리가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스트로크로 인해 생겼고 아직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되지 않은 피치마크 안에서 플레이어의 볼 일부가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3b의 절차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치마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된 경우’란, 고의 여부나 수리의 질 또는 완성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 눌러졌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된 경우’의 예로는 피치마크를 클럽 또는 발로 누른 경우, 누군가 티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수리를 시도한 경우, 또는 피치마크가 위치한 구역 위로 잔디 깎는 기계가 지나갔거나 코스 관리인이 여타의 방식으로 그 구역을 정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리된 피치마크는 눈에 보이는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이 로컬룰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2026년 1월 개정)

로컬룰 모델 F-5

F-5 -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

목적 - 볼이 퍼팅그린 이외의 코스의 구역에 놓여 있을 때,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그 자체로 규칙 16.1에 따른 방해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퍼팅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가 그린 밖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해도 될 정도로 짧게 깎여 있는 경우에는 그 퍼팅그린에 인접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그 스트로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구역에 놓여 있고,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규칙 16.1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구제를 특정한 상황(예-특정 홀이나 특정 장애물에 대해 또는 볼과 장애물이 모두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수리지로부터도 이러한 구제가 허용되도록 본 로컬룰을 수정할 수 있으며, 특정 구역과 특정 유형의 수리지로부터의 구제만을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5.1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퍼팅그린상이나 퍼팅그린에 인접한 동시에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볼이 일반구역에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동시에,
 - 퍼팅그린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고,
 - 플레이어의 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방해와 플레이 선 방해라는 두 가지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

예외 - 플레이 선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플레이 선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5.2

로컬룰 모델 F-5.1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두 번째 단락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본 로컬룰은 볼과 장애물이 모두 페어웨이 잔디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게 깎인 일반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26년 1월 개정)

로컬룰 모델 G-6:

G-6 - 전동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라운드 동안 모든 유형의 전동차량(예-골프 카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코스에서 걸으며 플레이하는 것을 경기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전동차량의 사용이 안전을 저해하거나 코스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위원회가 본 로컬룰을 채택하더라도, 전동차량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예 -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 때 플레이어들을 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다시 플레이할 지점으로 데려가거나 그 지점에서 도로 데려오는 것이 허용된 경우).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허락 없이 승차한 경우, 그 상황이 위원회라도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플레이어의 승차를 승인했었을 상황이었다면 그 페널티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볼을 분실하고 티잉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아무도 없고 자원봉사자가 태워다주겠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전동차량에 승차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요청이 있었으면 태워다줬을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페널티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플레이어가 승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사후에 그 승차를 승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승차를 제공한 사람이 대회 관계자로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믿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로컬룰에 의해 전동차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코스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것이 본 로컬룰의 원칙이므로, 플레이어가 아직 걷지 않은 거리를 차량을 타고 앞으로 가는 것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티샷을 한 후 음료수나 간단한 스낵을 사기 위해 그늘집에 들른 후 자원봉사자의 카트를 얻어 타고

전방에 자신의 볼이 있는 곳까지 간 경우,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해주어서는 안 된다.

로컬룰 모델 G-6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나 캐디는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경우 또는 추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유형의 전동차량에도 승차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를 해야 하거나 플레이한 후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동차량의 승차를 승인한다.]

[플레이어와 캐디는 [홀 번호] 홀과 [홀 번호] 홀 사이에서 셔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2026년 1월 개정)

로컬룰 모델 G-9:

주: 아래 로컬룰 모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발표되었거나 디지털 버전 MLR G-9을 대체한다.

로컬룰 모델 G-9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클럽으로 교체하는 경우

목적: 규칙 4.1a(2)에서는 플레이어가 클럽을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운드 동안 손상된 클럽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클럽이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클럽의 교체를 허용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9

“규칙 4.1a(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1. 라운드 동안 또는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에 의해 손상된 클럽은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다만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가 클럽을 고의로 남용하여 손상시킨 경우에는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의 목적상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샤프트:

- 샤프트가 조각나거나, 휘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뒤틀려지거나, 갈라진 경우

클럽헤드(클럽 페이스 제외)

- 클럽헤드가 눈에 띄게 금이 가거나 상당히 변형된 경우(굽히거나 흠이 나거나 경미하게 움푹 들어간 경우는 제외)
- 클럽헤드가 샤프트로부터 헐거워지거나 샤프트에 더 이상 붙어있지 않은 경우
- 클럽헤드 내부의 부품이 헐거워진 경우(예-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클럽 페이스:

- 클럽 페이스가 눈에 띄게 금이 가거나 변형된 경우(흠이 나거나 경미하게 움푹 들어간 경우는 포함되나, 단지 굽힌 자국만 있는 것은 제외)

그립:

- 그립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헐거워진 경우

2. 본 로컬룰에 따라 클럽을 교체하는 경우:

- 원래의 클럽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부러지거나 손상된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 함으로써 생긴 공백은 반드시 그 클럽 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클럽으로 채워져야 한다.
- 규칙 4.1b(4)를 수정하여 플레이어나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플레이어나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

이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클럽을 조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규칙 4.1b(4)의 그 밖의 제한 사항은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는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 다른 플레이어 위하여 가지고 있는 클럽을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4.1b 참조” (2026년 1월 개정)

로컬룰 모델 M-4:

M-4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인 경우, bunker에 있는 볼에 대한 제한적인 구제

목적: bunker의 디자인과 모양은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그 장치의 크기와 제한된 가동성으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는 플레이 선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위치를 잡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위치를 잡는 데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종종 초래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bunker 주변의 벽이나 턱 또는 경사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bunker 안의 모래 경사면이 너무 가팔라서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는 데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가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본 로컬룰은 플레이어가 동일한 bunker 내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한다.

본 로컬룰은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그 bunker 안의 다른 지점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를 원하겠지만, 합리적인 노력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데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로컬룰 모델 M-4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볼이 bunker에 정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그 플레이어는 동일한 bunker 내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그 볼을 놓인 그대로 자신이 의도하는 플레이 선으로 플레이하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벙커 주변의 벽이나 턱 또는 경사가 플레이어의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가 위치를 잡는 데 방해가 될 때)
- 그 볼을 놓인 그대로 자신이 의도하는 플레이 선으로 플레이하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데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플레이어가 자신의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모래 경사면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 또는 다른 볼을 드롭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

- 기준점: 불합리한 노력 없이 플레이어의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의 위치를 잡고 플레이어의 볼을 그 벙커 내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 구제구역의 크기: 어느 방향으로든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동일한 벙커 안이어야 한다.

예외 스탠스가 불가능하더라도,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스탠스를 취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플레이어가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가 명백하게 불합리할 때(예-볼이 가파른 모래 경사면에 묻힌 경우)
-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이 하기 때문에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 때:
 - 플레이어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플레이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예-스탠스를 취하는 데 불합리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아웃오브바운즈 쪽이나 페널티구역 안으로 볼을 플레이하려는 경우)
 - 플레이어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이나 스윙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 (2024년 1월 추가)

로컬룰 모델 M-4의 적용 및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2024 1월 추가)